

자동차 감정평가표

APPRAISAL STATEMENT

12

이 감정평가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 9조에 따라 성실·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이에 서명 날인함.

감정평가사

이신복

이 선

복 (인)

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감정평가액 | 금일백만원정(₩1,000,000-) | | |
| 평가의뢰인 | 철원소방서장 | 평가목적 | 처분 |
| 채무자 | -- | 제출처 | 철원소방서 |
| 소유자 (대상업체명) | 철원소방서 (소방행정과-8647) | 평가조건 | -- |
| 목록표시근거 | 자동차등록증 | 가격시점 | 조사기간 |
| | | 2012.10.11 | 2012.10.11 |
| | | 작성일자 | 2012.10.11 |

| 평가내용 | 공부(의뢰) | | 사정 | | 평가가격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| 종별 | 면적 또는 수량 | 종별 | 면적 또는 수량 | 단가 | 금액 |
| | 자동차 | 1 | 자동차 | 1 | - | 1,000,000 |
| | 합계 | | | | | ₩1,000,000.-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본인은 공정,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함.

심사자 : 감정평가사

김주일

김 주 일

(인)



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

ANALYSIS OF DATA AND VALUE CONCLUSIONS

1. 평가대상 물건 개요

본 평가는 '철원소방서'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처분결정된 자동차(마티즈 경형승용 · 2002년식 · 형식: 4A11BG)에 대한 처분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.

2. 평가액의 산출근거

가.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

자동차는 차종 · 년식 · 형식 · 현상 · 관리운행상태 및 동종 유사차량의 시중거래 시세 등을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


3. 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본건 자동차의 평가액은 『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』 및 제반법령 등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.